

## < 변경 대비표 >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유리글로벌Top10주식과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변경시행일 : 2024.09.26

3. 정정사항

-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보완 반영

[신탁계약서]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정정 전	정정 후
<p>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 ② &lt;생략&gt;</p> <p>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3. &lt;생략&gt;</p> <p>14. Class S 수익증권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u></p> <p>15. Class S-P 수익증권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p> <p>16. Class S-R 수익증권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p> <p>④ ~ ⑤ &lt;생략&gt;</p>	<p>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 ② &lt;현행과 같음&gt;</p> <p>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3. &lt;현행과 같음&gt;</p> <p>14. Class S 수익증권 :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u></p> <p>15. Class S-P 수익증권 :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p> <p>16. Class S-R 수익증권 :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p> <p>④ ~ ⑤ &lt;현행과 같음&gt;</p>

**[(간이)투자설명서]**

-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보완 반영

항 목	정정요구 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아니오	정기갱신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판매경로) 온라인슈퍼(S)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u>	- 최근 결산기 기준 업데이트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 운용전문인력)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판매경로) 온라인슈퍼(S) :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u>  * 온라인슈퍼 관련 이하 같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아니오	-	-	2024.09.26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5. 운용전문인력	아니오	기준일 현재 갱신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아니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u>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u>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u>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u>

<p>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p>	<p>아니오</p>	<p>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보완 반영</p>	<p>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p> <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 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 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p> <p>유리크레딧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u>채권 잔존만기 2년 이내로 투자하여 금리상승 리스크 최소화</u></p>	<p>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u>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p> <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 * 온라인슈퍼 관련 이하 같음</p> <p>유리크레딧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u>포트폴리오 내 채권의 만기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금리 상승 리스크 분산 추구</u> * 해당 모투자신탁 관련 이하 같음</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p>아니오</p>	<p>설정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p>	<p>-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 4등급 (정정 전1)</p>	<p>-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 4등급 (정정 후1)</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아니오</p>	<p>정기갱신</p>	<p>-</p>	<p>최근 결산기 기준 업데이트</p>
<p>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p>				
<p>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p>	<p>아니오</p>	<p>정기갱신</p>	<p>-</p>	<p>최근 결산기 기준 업데이트</p>
<p>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p>				
<p>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p>	<p>아니오</p>	<p>기준일 현재 갱신</p>	<p>-</p>	<p>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p>

**(정정 전1)**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60% 이상,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40% 이하 투자하여 6등급 중 **위험도가 보통인 4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이자율 변동 및 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원본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트 생략

[유리자산운용(주)의 위험등급 분류기준(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①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②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③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④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 ⑤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 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유리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각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은 해당 상품 유형의 기본적 속성을 단순화하여 기술한 것입니다. 실제 위험등급의 분류는 상품의 세부적 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일부 상품의 경우 부여된 위험등급이 해당 위험등급에 대한 상기 설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리자산운용의 내부절차에 의한 판단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정정 후1)**

- 유리자산운용(주)은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6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 “유리자산운용(주)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같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이 13.13% 이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보통인 4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추후 매 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 및 외국 주식 등에서의 투자가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위험이 유발하는 손실을 감내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차트 삭제

[유리자산운용(주)의 위험등급 분류기준\_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4등급 (보통 위험)	5등급 (낮은 위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sqrt{250}$ )를 곱해 산출

주1) 설정 3년 경과 투자신탁은 출시 이후부터 등급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사용)"에 따른 위험등급을 부여합니다.

주2)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유리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또는 판매회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